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7
----------	------

2017년 12월 1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가. 제안이유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기존 수익창출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5. 05. 법률자문결과 현행의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경기침체 및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고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필요성

- 수익창출형의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존재('15. 05. 법률자문결과)
-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형 전환 필요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악화로 재정적자 가속화

3) 위탁사무 내용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운반에 관한 사항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에 관한 사항
- 폐전기전자제품의 새로운 수거체계 확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등

4) 시설개요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 시설규모 : 처리능력 3,600톤/년, 부지면적 2,257.5 $m^2$ , 건축면적 809.95 $m^2$
- 주요업무 : 폐중소형 가전제품, 폐휴대폰 및 폐사무기기 등 자원화

### 〈시설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3년(2018. 4. 1. ~ 2021. 3. 31.)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계약 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참여 조건 : 제한경쟁
  - 처리량 1200톤/년 이상 도시금속회수센터 또는 선별장, 그 외 유사시설 운영실적 보유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자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 위탁비용 : 9,288백만 원

구 분	운영원가	비 고
총 위탁비용	9,288백만 원	물가상승률 반영
2018년 위탁비용	3,005백만 원	-
2019년 위탁비용	3,095백만 원	3% 인상 적용
2020년 위탁비용	3,188백만 원	3% 인상 적용

○ 2018년 운영원가 산출근거

- 운영인력 산정 : 일평균 처리량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산정하는 물량계산기준 사용

※ 2018년 추정수거량 ÷ 근무일수 ÷ 1일 일평균 처리량 = 인원

(단위 : 명)

구분		적정인원	비고
경영지원팀	센터장	1	고정배치인원 (직무분석 결과)
	기획실장	1	
	영업 부장	1	
	생산 부장	1	
	데이터관리	1	
	홍보 및 교육	1	
	총무/경리	1	
경영지원팀 인원 소계		7	
외부선별반	외부선별반장	1	외부선별반 인원 산정 참고 (직무분석의 1명 반장 포함)
	외부선별원	9	
외부선별반 인원 소계		10	
생산지원반	생산지원반장	1	고정배치인원 (직무분석 결과)
	압축기조직원	1	
	절단기조직원	1	
	내부선별원	2	
	구리작업원	1	
생산지원반 인원 소계		6	
생산반	생산반장	2	생산반 인원 산정 참고 (직무분석의 2명 반장 포함)
	분해생산원	29	
생산반 인원 소계		31	
수송반	대형수송원	2	고정배치인원 (직무분석 결과)
	소형수송원	2	
	지게차	2	
수송반 인원 소계		6	
합계		60	

○ 운영원가 산정

구분		제조, 생활임금 혼용기준원가	비고	
비 정 산 비	인 건 비	직접노무비	1,910,466,984	처리물량 등 반영 60명으로 산정
		간접노무비	-	
		<b>인건비 소계</b>	<b>1,910,466,984</b>	
	경 비	인적보험료	204,039,888	
		복리후생비	134,928,448	
		안전점검비	8,235,600	
		차량유지비	47,335,508	
		통신비	2,472,960	
		여비교통비	1,280,000	
		소모품비	14,093,147	
		도서인쇄비	100,000	
		안전관리비	11,270,347	
		지급수수료	2,013,600	
<b>경비소계</b>	<b>425,769,498</b>			
<b>비정산비소계</b>		<b>2,336,236,482</b>		
정 산 비	경 비	전력비	17,193,216	
		폐기물처리비	94,166,640	
		용수비	680,539	
		수리수선비	28,467,326	
		연료비	1,430,909	
		건물보험료	4,562,319	
		<b>경비소계</b>	<b>146,500,949</b>	
<b>정산비소계</b>		<b>146,500,949</b>		
순원가		2,482,737,431	비정산비+정산비	
일반관리비(5.4%)		126,156,770	비정산비x5.4%	
이윤(5%)		123,119,663	(비정산비+일반관리비)x5%	
총괄원가		2,732,013,863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273,201,386	총괄원가x10%	
합계		3,005,215,249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9)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에 따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불식
-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 가능
-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원순환기능 강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방안 마련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 적용구간을 8구간으로 설정하여 95%~105% 구간을 기준 설정
- 인센티브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페널티는 이윤의 비율을 차등 부여

목표 달성률	내 용	비 고
125% 이상	초과달성 수익금의 15% 지급	
115% 이상 ~ 125% 미만	초과달성 수익금의 10% 지급	
105% 이상 ~ 115% 미만	초과달성 수익금의 5% 지급	
95% 이상 ~ 105% 미만	-	
85% 이상 ~ 95% 미만	낙찰이윤률 대비 90% 지급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및 인정 시 페널티 미부여
75% 이상 ~ 85% 미만	낙찰이윤률 대비 80% 지급	
70% 이상 ~ 75% 미만	낙찰이윤률 대비 70% 지급	
70% 미만	차기 입찰 참가 제한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이하 “SR센터”라 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SR센터 현황 및 민간위탁 방식 변경 배경

- SR센터는 폐중소형 가전제품, 폐휴대폰 및 폐사무기기 등의 자원화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3,600톤에 달하고 있음.

현재 SR센터는 사회적기업인 에코시티서울(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전체 55명 중 37명이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초 SR센터는 수익창출형(독립채산제)<sup>1)</sup> 민간위탁으로 별도 위탁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판매단가 하락<sup>2)</sup>과 수탁업체인 에코시티서울(주)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sup>3)</sup>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이후 운영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이에 2016년도에는 시 지원금으로 3억 4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1)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15년 5월, 법률자문결과)

- 판매수익금을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위반

- 수익금을 시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2) 고철류(원/kg) : 308('14년) → 221('15년) → 108('16년) → 175('17년)

플라스틱류(원/kg) : 440('14년) → 440('15년) → 285('16년) → 200('17년)

3) '10~'15년까지 매년 1억 3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지원되었음

에는 SR센터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20명)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간위탁금 3억 6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최근 5년간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추정)
수 입	매출 등	2,076	2,005	1,785	1,420	1,857
	시지원금	-	-	-	346	360
지 출		1,841	1,764	1,799	1,658	2,101
운영수지		235	241	-14	108	116

2) SR센터 민간위탁(예산지원형) 타당성

- SR센터의 업무(자원화 등) 및 직원 구성(사회적 취약계층 다수) 특성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악화로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어 별도의 지원 없이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금번 동의안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절차상 문제점

- 최근 2년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SR센터의 재정적자 및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작년 말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현 수탁업체와의 위탁기간 종료(’17.12.31)에 앞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의회 동의 및 수탁업체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음.

이렇듯 1년 전부터 민간위탁 절차를 서두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도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되어 시의회 동의 이후 예산안 처리(예산 확보)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현 수탁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17.12.31 → ’18.3.31)을 전제로 향후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하도록 한 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논의가 되었던 점 등을 들어, 향후 동의 절차 준수를 전제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고려해야 할 것임.

#### 4) 기타

-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게 되면 SR센터의 운영원가를 전액 시 재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운영방식보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행 노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업체와의 협약체결 시 인센티브 지급 및 페널티 부여 항목을 추가하여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인건비를 금년도 보다 5명 증원한 60명으로 산출하여 2018년도 민간위탁금을 30억 5백만원<sup>4)</sup>으로 제출하였지만, 이후 예산과 조정과정에서 직원수를 현재와 같이 55명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SR센터 운영 효율화」 민간위탁금은 27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4) 부지점용료와 민간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27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기존 수익창출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5. 05. 법률자문결과 현행의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경기침체 및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나.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고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필요성
    - 수익창출형의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존재('15. 05. 법률자문결과)
    -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형 전환 필요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악화로 재정적자 가속화

## 다. 위탁사무 내용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운반에 관한 사항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에 관한 사항
- 폐전기전자제품의 새로운 수거체계 확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등

## 라. 시설개요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 시설규모 : 처리능력 3,600톤/년, 부지면적 2,257.5 $m^2$ , 건축면적 809.95 $m^2$
- 주요업무 : 폐중소형 가전제품, 폐휴대폰 및 폐사무기기 등 자원화

〈시설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3년(2018. 4. 1. ~ 2021. 3.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계약 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참여 조건 : 제한경쟁
  - 처리량 1200톤/년 이상 도시금속회수센터 또는 선별장, 그 외 유사시설 운영실적 보유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 위탁비용 : 9,288백만 원

구분	운영원가	비고
총 위탁비용	9,288백만 원	물가상승률 반영
2018년 위탁비용	3,005백만 원	-
2019년 위탁비용	3,095백만 원	3% 인상 적용
2020년 위탁비용	3,188백만 원	3% 인상 적용

○ 2018년 운영원가 산출근거

- 운영인력 산정 : 일평균 처리량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산정하는 물량계산기준 사용
- ※ 2018년 추정수거량 ÷ 근무일수 ÷ 1일 일평균 처리량 = 인원 (단위 : 명)

구분	직인원	비고
경영 지원팀	센터장	1
	기획실장	1
	영업 부장	1
	생산 부장	1
	데이터관리	1
	홍보 및 교육	1
	총무/경리	1
<b>경영지원팀 인원 소계</b>		<b>7</b>
외부 선별반	외부선별반장	1
	외부선별원	9
<b>외부선별반 인원 소계</b>		<b>10</b>
생산 지원반	생산지원반장	1
	압축기조직원	1
	절단기조직원	1
	내부선별원	2
	구리작업원	1
<b>생산지원반 인원 소계</b>		<b>6</b>
생산반	생산반장	2
	분해생산원	29
<b>생산반 인원 소계</b>		<b>31</b>
수송반	대형수송원	2
	소형수송원	2
	지게차	2
<b>수송반 인원 소계</b>		<b>6</b>
<b>합계</b>		<b>60</b>

○ 운영원가 산정

구분		제조, 생활임금 혼용기준원가	비고		
비 정 산 비	인 건 비	직접노무비	1,910,466,984	처리물량 등 반영 60명으로 산정	
		간접노무비	-		
		<b>인건비 소계</b>	<b>1,910,466,984</b>		
	경 비	인적보험료	204,039,888		
		복리후생비	134,928,448		
		안전점검비	8,235,600		
		차량유지비	47,335,508		
		통신비	2,472,960		
		여비교통비	1,280,000		
		소모품비	14,093,147		
		도서인쇄비	100,000		
		안전관리비	11,270,347		
		지급수수료	2,013,600		
		<b>경비소계</b>	<b>425,769,498</b>		
	<b>비정산비소계</b>		<b>2,336,236,482</b>		
	정 산 비	경 비	전력비	17,193,216	
			폐기물처리비	94,166,640	
			용수비	680,539	
			수리수선비	28,467,326	
연료비			1,430,909		
건물보험료			4,562,319		
<b>경비소계</b>			<b>146,500,949</b>		
<b>정산비소계</b>		<b>146,500,949</b>			
순원가		2,482,737,431	비정산비+정산비		
일반관리비(5.4%)		126,156,770	비정산비x5.4%		
이윤(5%)		123,119,663	(비정산비+일반관리비)x5%		
총괄원가		2,732,013,863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273,201,386	총괄원가x10%		
합계		3,005,215,249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자.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에 따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불식
-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 가능
-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원순환기능 강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방안 마련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 적용구간을 8구간으로 설정하여 95%~105% 구간을 기준 설정
- 인센티브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페널티는 이윤의 비율을 차등 부여

목표 달성률	내 용	비 고
125% 이상	초과달성 수익금의 15% 지급	
115% 이상 ~ 125% 미만	초과달성 수익금의 10% 지급	
105% 이상 ~ 115% 미만	초과달성 수익금의 5% 지급	
95% 이상 ~ 105% 미만	-	
85% 이상 ~ 95% 미만	낙찰이윤률 대비 90% 지급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및 인정 시 페널티 미부여
75% 이상 ~ 85% 미만	낙찰이윤률 대비 80% 지급	
70% 이상 ~ 75% 미만	낙찰이윤률 대비 70% 지급	
70% 미만	차기 입찰 참가 제한	

※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 윤인석 (☎ 2133-3690)